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5조)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 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예산과
- 라. 입법예고 : 2025. 4. 3. ~ 2025. 4. 23.(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통합기금의 존속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고, 조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남양주시 예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향후 기금정비계획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 조문

-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내용이므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 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예산과장 안병찬